

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3. 2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단체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동조례 제6조의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단체명칭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가. 제6조제1항제1호중 「농·축·임업협동조합등 생산자 단체」를 「농·축산업협동조합·산림조합등 생산자 단체」로 변경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마. 신·구문대조표 : 별첨

평창군조례 제 호

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중 "농·축·임업협동조합등 생산자 단체"를 농·축산업협동조합·산림조합등 생산자 단체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운영의 위탁) ① (생략)</p> <p>1. <u>농·축·임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</u></p> <p>2. 기타 지역특산품 및 농·축·임산물 생산단체</p> <p>3. 농업관련단체 등 비영리단체</p> <p>4. 영농조합법인 및 운영경험이 있는 일반인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6조(운영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농·축산업협동조합·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</u></p> <p>2. -----</p> <p>3. -----</p> <p>4.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산림조합법(시행일 : 2000. 5. 1)

제3조(명칭) ①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인 산림조합의 명칭을, 전문 조합은 그 지역명과 품목 또는 업종명을 붙인 산림조합의 명칭을, 중앙회는 산림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.

②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산림조합·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